

무료통역 서비스 포기각서

조오지아 주 인력개발부(DHR)의 에이전시나 대행기관을 통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부는 먼저 당사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확인한 후 통역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전속 통역사를 동반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인력개발부나 그 대행기관으로부터 사전 보장이나 승인을 얻지 않은 통역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_____ 은, _____
(클라이언트 이름) (기관 이름)

(으)로부터 무료 통역서비스를 받을 본인의 권리에 대해 통보 받았습니니다. 본인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기 인력개발부의 무료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DHR 의 무료 서비스. 본인은, _____ 를
(통역사성명)

_____ 일부터 _____ 까지 본인의 통역사로 선임합니다.
(날짜) (날짜)

본인은 언제든지 본 무료서비스 포기각서를 취소한 후 통역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통역 서비스 비용은 _____ 부서가 지불할 것이라
(조오지아주 인력개발부 기관)

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아는 한, 본인의 전속 통역사로 선임된 사람은 18 세 이상입니다. 본 포기각서는 통역서비스에만 한정될 뿐, 상기 통역사에게 본인을 대표할 자격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 대행기관은 의사소통과 사후지시사항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 있는 인증 통역사를 섭외하여 본인이 선택한 통역사의 통역과정을 관찰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래의 통역사가 본 양식을 본인에게 말로 통역하였습니다.

(고객 서명)

(날짜)

(통역사 서명)

(날짜)

(필사나 입력한 통역사의 성명과 서명)

(날짜)

(직원서명)

(날짜)

(직함)